

<제2세션>

공인 관련 사생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나?

■ **진행** : 구윈화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변호사)

■ **패널** : 박유빈, 안기문, 정재하, 정지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영(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1중재부 조사관)

<제2세션> 공인 관련 사생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나?

▶ 토론개요

제2세션 토론 역시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제 처리한 사건을 토대로 진행하되, 신청인들의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다.

본 사례는 합참의장으로 15년 전 전역한 신청인 1과 국내 대기업의 일본 동경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신청인 2(신청인 1의 딸)가 A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A 언론사는 『전 합참의장 딸과 일본 총리 아들 결혼설』 제목의 기사로 기자가 신청인 1과의 전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해, 신청인 1의 딸인 신청인 2가 일본 유학 중 現 일본 총리의 막내아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5월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최초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결혼설을 부정하는 취지의 신청인 1의 주장을 추가 보도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A 언론사의 보도 이후 주위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으로 사생활이 제한을 받게 되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음과 특히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신청인 2의 경우 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긴장된 가운데 일본 내 극우단체의 테러 위협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심리 중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취하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본 토론회의 제2세션에서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공적 관심사의 범위와 사생활 보호, 음성권 침해와 당사자 동의 유무, 과거 공인의 현재적 공인성 등에 대한 학생 패널들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쟁 점 1 : 공적 관심사의 범위와 사생활 보호

- 유명인의 결혼설 등 사생활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가 -

박 유 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우선 위법성 조각여부를 중심으로 해당 보도가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인지 검토해 본다.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그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묵시적 승낙이 필요하고, 이러한 승낙 없이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언론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침해에 대한 제재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된다. 프라이버시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판례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근거하여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및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고려가치 등을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그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것이 사회 일반의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신청인 1은 15년 전 합참의장을 지낸 인물로 현직에 있을 당시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미 15년 전에 퇴역하여 지금까지 일반인으로서 살아온 신청인 1이, 그러한 과거의 지위에 근거하여 아직도 공적 인물이라고 판단되어야 하는지는 의심스럽다. 서울중앙지법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에서는 한때 공적 인물이었거나 유명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중의 정

당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해당 판례는 “원고는 1978년경부터 TV 텔런트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8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한 후 일체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중략)”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한때 공적 인물이었던 자라 하더라도 그 지위에서 물러나 그 이후 언론보도의 대상이 될 만한 소지 없이 일반인으로서 생활하여 왔다면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사생활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라고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15년 전에 퇴직한 고위공무원인 신청인 1은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딸의 결혼에 관한 사항이 갑자기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일본과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보도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일본 총리의 아들이 한국의 일반 여성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국가적 차원의 문제로서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 1에 대한 이 사건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신청인 2는 모 기업의 일본 지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널리 공중에 알려진 ‘공적 인물’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결혼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신청인 2가 일본 총리의 아들과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독도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와 맞물려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바, 신청인 2의 결혼설 상대방이 공적 인물 또는 그에 준하는 자¹⁾라고 해서 신청인 2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그의 결혼에 대한 보도가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유명 가수 신해철과 전 미스코리아 출신 일반인 윤OO의 결혼 보

1) 일본 총리가 공적 인물임은 명백하나, 일본 총리의 아들이 공적 인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자세한 논의는 앞의 <제1세션> 토론내용 참조

도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신해철과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공적 인물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신해철의 결혼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윤OO의 실명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달리 신해철이 결혼할 상대가 바로 윤OO라는 것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서울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사안에서 신청인 2에 대한 결혼설 보도 역시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이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한 보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볼 여지가 없는 바, 위법성 조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신청인 2의 결혼설에 대한 보도가 위법한 보도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신청인 2의 아버지인 신청인 1과의 대화 내용 보도 또한 신청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공적 인물의 결혼은 그 인물의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상대방의 성명과 초상, 경력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전반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지게 되었다면, 그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등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에 대한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가합44370)이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국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는 일본 총리 자녀의 결혼이 국내에서 대중의 관심사가 되었던 적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일본 총리 아들의 결혼 상대가 한국 여성이라는 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결혼설에 대한 보도 또한 일본 총리의 아들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1이 전 합참의장으로서 신청인 2의 아버지라는 사실 및 신청인 2의 결혼설에 대한 신청인 1의 견해에 대한 피신청인 측의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의 흥미 내지 호기심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정 지 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공인의 결혼설 보도 및 열애설 보도는 그것이 사적 영역에 관한 사안임에

도 불구하고 공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간 충돌을 가져온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결혼설 보도는 허위성, 추측성 보도인 경우가 많다. 이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결혼설에 대한 허위보도나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이 아니라, 결혼설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그 후속보도로서 결혼설의 진위에 대한 신청인 측 입장을 묻는 보도, 즉 반박 보도 및 정정 보도로서 진실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보도가 진실함을 전제로 신청인 2에 대한 결혼설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언론기관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일 때에는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서울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은 '공적 인물(공인)'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 간 차이이다. 공적 인물이란 그의 지위, 재능, 명성, 생활양식 또는 인기 등에 의해 명사가 된 자를 의미한다. 이런 공적 인물의 경우, 현직에 있을 때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기 기간과 퇴임 후 일정기간의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가 은퇴 후 일정기간의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속할 것이다. 하지만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은 공적 인물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공적 인물은 당연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겠지만, 공적 인물이 아닌 통상인이 어떤 사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그 사건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의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사건과의 관련 범위 내에서'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판례는 이에 대해 위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적 인물인 가수 신해철의 결혼설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신해철에 대해서는 공적 인물로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또 다른 원고 윤OO에 대해서는 신해철과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공적 인물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 다른 공적 인물인 신세계 그룹 부회장인 정용진의 결혼설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가합44370 판결)에서는 원고 한OO의 경우 원고 정용진과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 정용진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결혼예정 사실 등에 관한 일반적인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건에 있어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있다고 볼 때 위 전자의 판례는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판단해보아야 하였을 것이다.

본 사안으로 돌아와 신청인 2가 공인인 일본 총리 아들과 결혼한다는 것만으로 공적 인물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신청인 2의 공적 지위 획득 여부와 무관하게 본 결혼은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의 총리 아들과의 결혼이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그 결혼 여부가 일반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결혼의 범위 내에서는 신청인 2 또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신청인 2의 기본적인 정보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청인 2의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이익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익형량에 대한 판례의 기준에 따라 본 보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면, 보통 일반적인 결혼설 보도는 사적 영역의 것으로 사생활 침해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국민 일반의 호기심 충족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최초로 결혼설을 보도한 언론으로 인해 신청인 2가 일본 현지에서 테러위협을 받는 등 결혼설의 진위 여부가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으로 편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타 결혼설 보도에 비해 중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진실보도, 신속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은 위 결혼설로 인하여 신청인 2의 사생활 자유가 침해된다 하

더라도 이를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

침해방법의 상당성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은 앞서 언급한 정용진 판례에서 언론이 상견례 및 데이트 장면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부분, 즉 밥 먹는 사진, 신혼집 사진과 같은 파파라치 사진을 열장 가까이 게재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한 점에 있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결혼 예정 사실 등 일반적인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된 원고들의 사생활의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어,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아 원고 측에서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사건의 결혼설 보도 또한 둘의 데이트 장면이나 신청인 2의 은밀한 개인 생활을 파파라치 형식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신청인 2에 대한 성명, 학력 등 기본적인 정보와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도에 그치고 있어 보도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살펴보건대, 본 보도로 인한 신청인 측 피해의 내용이 신청인 2의 이름 및 학력 등 신상에 대한 기본 정보에 그치고 있고, 이는 이미 타 방송사의 보도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상위에 며칠 간 랭크되어 있어 사회 전반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던 것이라는 점에서 본 보도로 발생한 피해는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종합 편성채널로서 2012년 10월 4일 시청률조사회사 AGB닐슨미디어리서치의 집계결과 시청률이 0.795%에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파급력 또한 크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타 언론의 최초 보도와 구분된 확대보도로써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 측에 피해를 준 바가 적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 손해배상의 핵심으로 신청인 측에서 주장하는 결혼설 보도로 인한 테러위협은 한일관계의 정세에 기인한 것이지 최초 보도도 아닌 정정보도로서의 본 보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 및 침해행위의 방법의 상당성과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중대성을 비교형량해 볼 때 전자의 이익이 커 본 언론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

안 기 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피신청인 보도 이전에 신청인의 결혼설이 여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응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한다. 그러나 본 사건은 공적 인물인 일본총리와 그의 아들에 관한 보도에서 부가적으로 다뤄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반인인 신청인의 신변을 중심으로 보도가 이뤄졌다는데 그 위법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2의 실명과 학교 및 가족관계사항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현재 그는 일본 현지에서 우익 단체의 테러위협으로 인한 신변 안전과 보안 문제로 사생활침해를 넘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힘들게 이어 나가고 있다.

앞서 정용진 부회장의 결혼설에 관한 보도의 경우는 공적 인물인 정 부회장 본인에 대한 보도였다는 점에서 본 사안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 법원도 해당 판례에서 공인과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설시하고 있는 바, 아직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본 사안에서 평범한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면서 결혼설을 보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본 사건과 같이 결혼설 보도가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허위추측성 보도의 가능성에 대해 보다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이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정서적이고 내밀한 감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타인의 결혼에 관한 보도는 그 자체로 일면 허위보도의 가능성을 항상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혼, 혹은 파경이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허위추측성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의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언론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래와 같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혼설이 지니는 이러한 특수성을 기초로 당사자들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법적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 재 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본 사건의 결혼보도는 다른 결혼설 보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즉 한국 및 동아시아권에서 결혼 특히 사회지도층의 혼인이 가지는 특수한 의미를 숙고해 봐야 한다.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문제는 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엄격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미 각국에서 논의되어 온 문제인데 반하여, 역사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 혼인은 단순한 두 남녀의 개인적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 간의 영속적인 결합을 의미하였다. 특히, 권력층 자제들 간의 혼사는 집안의 결연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정치행위였으며,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권력가 또는 재벌가 사이의 혼사를 통하여 권력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유무형의 이득을 주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국사회에서 혼인이 가지는 이러한 특수성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풍토 하에서 프라이버시권 이론을 발전시켜온 구미각국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한국에서의 결혼설 보도에 있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관계를 고려해볼 때 한국의 전직 합참의장과 현 일본총리 사이의 혼사는 단순히 국내 권력층 간의 혼사를 넘어서 양국 간의 외교관계를 증진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공적 관심사에 속하는 사안으로서 보도의 중요성이 더욱 더해진다고 하겠다.

본 사안의 결혼설이 허위추측성 보도였다는 데에 대하여는, 결혼설 보도 자체의 확인이 어려운 언론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다.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결혼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다소 불확실, 불분명하더라도 신속히 보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된 논란은 신청인이 촉발한 것이 아니다. 피신청인은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의 보도에 더해, 보도의 정확성과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첨가한 것이다. 피신청인의 본 사건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를 접하는 대중들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신청인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쟁 점 2 : 음성권 침해와 당사자 동의 유무

- 취재 시 기자의 신분과 소속을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가 -

정 재 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통화를 시작함에 앞서 본 언론사 소속이라는 사실과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더욱이 당시 신청인은 본 사건과 관련한 다른 언론사의 최초 보도로 인하여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었으므로 후속보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통화 내용이 기사화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또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신청인이 자신의 음성이 방송되는 것을 꺼려하였다면 최소한 음성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음성변조 등의 방법을 취하여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어야 하나,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 점에서 통화녹음의 공개에 대한 신청인의 묵시적인 동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결혼설의 당사자인 신청인으로서의 최초의 다른 언론보도에 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최초 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았기에 본 사건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론권 보장과 보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다. 시청자도 당사자인 신청인의 생생한 육성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신청인도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였기에 본 사건의 피신청인은 그에 필요한 창구를 제공한 것일 뿐이다.

안 기 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최근 시청률과 같은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사실을 언론사가 그대로 기사화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

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프라이버시를 공개해야할 수인의무를 지니고 있는 공인의 경우, 이러한 인격권 침해 보도문제는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숫자의 연예인들이 언론사의 일방적 보도행태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나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 일간신문이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전혀 무관한 일반인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인격적 침해를 가하는 등 이제 위법보도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가 진행됨으로써 보도의 대상자가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 역시 지나친 특종경쟁에 사로잡힌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먼저 공표하고 사후에 문제가 될 경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행태가 그 원인이 된 사건이다. 이에 본 보도사건을 실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보도가 심각한 인격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법보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과연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하는 것만으로 그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되는 것에 당사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것이다. 공적인 관심사 여부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본 사안과 같은 결혼설 보도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영역을 다룬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이 기사화 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사화 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기자로서도 보도에 보다 신중함을 기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해 보았을 때,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단지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것만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원은 과거 유명앵커였던 백지연 씨의 이혼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보도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보도였다는 취지의 하급심판결의 설시문구를 통해 이러한 프라이버시 관련 보도에 있어서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혹은 그와 동일한 수준의 묵시적 동의를 확인할 것을 주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공인이라도 개인으로서 가지는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언론기관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그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묵시적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나아가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예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쳤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칙적으로 사생활에 대한 본 사건의 기사화에 있어서 기자는 본인 혹은 최소한 본인의 아버지인 신청인 1의 명시적인 동의여부를 확인하였어야만 한다. 위 판례에서 기자는 당사자와의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서 기사화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항변한 바 있으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 보도에서 자신의 소속 언론사와 기자신분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동의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 2의 경우에는 유명앵커였던 백지연 씨와 달리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은 기자의 보도 과정상 위법성은 보다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비밀녹음을 통해서 보도영상에 신청인 1의 음성을 그대로 공개하였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기관, 특히 방송매체를 운영하는 당사자가 특정인과 전화로 인터뷰하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한 다음 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내보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즉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말을 비밀녹음하거나, 이를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일응 위법성을 추정 받게 된다.²⁾ 본 사건에서 신청인 1이 자신의 음성을 그대로 공개해도 좋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음은 명확하고, 우리 법원도 동의 없이 녹음한 전화통화를 음성변조 처리 없이 방송한 경우 음성권 침해를 인정(서울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8가합51935)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도 취재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음성을 내보낸 것은 명확히 당사자에 대한 음성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2) 박용상, ‘언론과 개인 법익 -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 제도’, 조선일보사(1997), 92면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의 문제는 모두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화 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관행이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종합할 수 있으며, 특히 사생활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 사건 보도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고려하는 기자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 지 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이익형량의 기준이 모호하여 본 보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힘들다 하더라도 신청인 1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프라이버시권 포기에 해당한다.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묵시적 동의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현재 법원은 대체로 묵시적 동의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앞서 사례로 든 백지연 씨의 전화인터뷰를 허락 없이 보도한 신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644112 판결)에서 법원은 “공인이라도 개인으로서 가지는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언론기관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그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묵시적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 언론사의 묵시적 동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하지만 묵시적 동의의 인정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본 사안은 위 묵시적 동의를 부정한 판례의 점과 두 가지 점에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관련 판례의 해당 기자는 백지연 씨에 대한 보도가 기사화되기 4개월 전부터 백지연의 근황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백지연과 전화를 주고 받는 등 친분이 있어 취재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백지연은 기자와의 대화내용이 언론을 통해 신문 기사화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본 사안의 경우에는 피신청인 측에서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한 시점이 이미 타 언론사에 의하여 최초로 위 결혼설 보도가 실명으로 이루어져서 신청인 1, 2의 이름이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는 등 이 사건 결혼설이 사회적으로 가

장 관심을 받을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신청인 1로서는 전화인터뷰에 앞서 기자의 소속과 신분을 밝힘으로써 신청인의 입장 및 사실을 밝히는 이 사건 전화인터뷰 내용이 방송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백지연 판례에서는 백지연 측이 통화할 때마다 자신이 법적 대응을 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소문이나 통화내용을 기사화 하지 말아 줄 것을 기자에게 당부하는 등 인터뷰 내용의 기사화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본 사안에서 신청인은 이 전화인터뷰 내용이 방송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연하자면 기자임을 밝혔을 때 신청인이 전화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결혼설의 진실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 답변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또 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고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바, 이는 백지연 판례에서 거듭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과 현저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은 기자의 신분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전화인터뷰의 방송 송출에 대한 신청인의 높은 예견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취재 후 방송 과정에서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판례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으므로, 언론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이를 게을리 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의정부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나 6848 판결이 있고, 만약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이 있다. 본 사안을 위 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판단해보건대, 피신청인 측 입장에서는 본 보도가 잘못된 결혼설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반박보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최초 결혼설 보도를 바로잡음으로써 오히려 신청인 측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위 전화인터뷰를 비공개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또한 본 보도는 신청인 측의 전화인터뷰에 언론사의

입장을 더하거나 주관적인 평가를 더함이 없이 객관적 입장에서 이를 보도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인터뷰 당시의 예상과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아가 묵시적 동의로 인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공인의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여 호화 결혼식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쓴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에서 묵시적 동의는 결혼식 보도와 관련해서만 한 것이고, 촬영한 사진 또는 화면을 향후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든 상관없이 일체의 공표에 대하여 동의한다거나 그 공표와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례는 반대해석해보자면 공인의 결혼식 장면을 촬영한 것은 결혼식 보도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장면을 예상한 대로 결혼식 보도에 관해서만 사용하는 한 묵시적 동의에 의해 초상권을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 판례의 태도는 본 사안에도 적용되어 전화인터뷰를 하여 그 내용을 예상한 대로 결혼식 보도에 관해서만 사용하는 한 묵시적 동의에 의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묵시적 동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보도와 관련하여 동의를 받은 상황과 현격히 다른 목적으로 방송됨으로써 취재원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며, 취재 기자가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의 내용이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도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부정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속한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일 것이다.

쟁 점 3 : 과거 공인의 현재적 공인성

- 과거 공인이었던 사람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수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안 기 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본 사례의 경우 언론사가 신청인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그의 사진을 공개하였으므로, 이러한 보도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은 신청인 2의 결혼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신청인 1의 주장에 관한 보도로, 그 보도의 내용 등을 전달하는 데에 신청인 1의 사진이 게재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동의 받지 못한 초상권 및 성명권의 공개로 인한 위법한 보도의 경우 그 위법성 조각은 언론기관이 대상자의 실명과 초상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서울동부지법 2009. 11. 24. 선고 2008가단 62527 참조), 먼저 원칙적으로 본 사건과 같이 대상자의 초상 공개가 필요한 보도가 아님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것은 방송보도에 필요한 한도를 넘고 상당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써 위법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보도된 사진이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인명록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라는 점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없었다고 보는 시각은 사안의 특수성에 따른 고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인 1이 현재도 활발하게 공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사진을 손쉽게 어디서나 접할 수 있었다면 초상권 침해에 대해 부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지만, 신청인 1은 15년 전에 퇴역해 현재 언론매체에 공개될만한 직위나 직책을 전혀 맡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신청인 1이 과연 초상권이 공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이른바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흔히 우리가 공적 인물로 평가할 때 고려하는 것은 첫째 지속적인 뉴스 가치가 있는 지위에 있는 인물이거나, 둘째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1은 공적 인물의 개념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적 인물이 아닌 인물의 초상을 공개함에 있어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동일한 사진이 과거 인명록에 공개되어 있고, 명예훼손과 결부된 보도내용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언론매체의 공개적인 초상 이용이 적법하였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언론사의 보도행태로 인하여 프라이버시와 음성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대중에 대한 각인성 높은 영상을 위하여 신중한 고려 없이 당사자의 초상을 공개하는 언론사의 오랜 관행이 본 사건 초상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시내에서 보행 중인 시민의 초상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한 사건들에서 해당 언론사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부여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가 다수 있다. 즉 중요한 것은 공적 인물이 아닌 당사자의 초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보도에서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사안에서도 해당 인명록 사진은 신청인 1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진 자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조사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진이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어서 본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진이 일반대중에게 당사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상권 침해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나아가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도에 거론된 내용이나 당사자의 초상, 음성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안 역시 대중들에게 관심사가 높은 가십거리로 인식됨으로써 신청인의 초상이 급격하게 확대 재생산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언론사가 보도지침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대법원이 초상권의 개념에 대해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

극적인 권리라는 점을 규정(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참조)한 것과 같이 능동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민감한 프라이버시 사항을 보도하면서 실명과 초상을 그대로 공개하여 그 피해를 확대 재생산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사회통념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가 취해야 할 태도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보도행태라고 할 것이다.

정 재 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본 사안의 보도에서는 이미 촬영된 신청인 1의 사진을 보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초상의 공표거절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 1이 공인 또는 시사적 인물에 해당하여,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³⁾가 있다. 누가 공인인가 또 어디까지 공인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는 정치인, 주요 공직자, 공기업 및 대기업 경영자 등을 공인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데 합참의장은 대한민국의 군인 중 서열 1위에 해당하는 보직으로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 공인이다. 또한 고위 공직자는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각종 예우를 받으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재직 당시의 경력을 바탕으로 퇴임 후에도 정치인, 기업체 임원, 대학 교원 등 사회 각 분야의 중요한 직책을 언제든지 맡을 수 있는 잠재적 후보군에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과 같은 전직 합참의장도 현직만큼은 아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인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나아가 신청인이 이른바 '상대적 시사인물'에 해당하는지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독일에서는 유명인의 초상권은 그들에 대한 일반 공중의 관심을 고

3) 서울지방법원 1995. 9. 27. 95카3438 결정(이 사건은 재벌그룹의 총수인 신청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평전의 표지 및 광고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한 행위에 대해 신청인이 그 평전의 제작·판매 및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한 것이다) 및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94카합 9230 판결 등에서 유명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물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가합13495 판결의 사안처럼 그 유명인이 보도의 내용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인의 초상을 보도에 이용한 경우라든가, 그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책자 또는 기사에서 그 유명인의 사진을 게재한 경우 등에는 아무리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려할 때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유명인을 해석상 정치인, 예술가, 유명배우, 스포츠 스타 등의 절대적 시사인물(Absolute Personen der Zeitgeschichte)과 예컨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범죄의 용의자와 같이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특정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진 상대적 시사인물(Relative Person der Zeitgeschichte)로 나눌 수 있고,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익명성에 대한 이익과 공중의 관심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 보도 당시 다른 언론사의 최초 보도로 인하여 결혼설의 당사자인 신청인 2뿐만 아니라 전직 합참의장인 신청인 1에 대하여도 대중들의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었고, 신청인 1은 이미 국가의 주요공직을 맡으면서 그 익명성을 제한받고 있었으므로 초상권이 제한되는 상대적 시사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안의 보도에 사용된 사진은 전직 합참의장인 신청인 1의 증명사진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역대 합참의장'을 검색해보면 1대부터 36대까지 합참의장의 증명사진 및 출생, 학력, 경력, 관련 정보 등 기본적인 인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인 1의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아도 신청인 1의 증명사진을 아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널리 공개된 정보라 할 수 있다. 또한 널리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초상의 공포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본 사례의 신청인 사진 이용에 있어서 방송의 내용 중에는 신청인 1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오로지 신청인 1의 딸과 관련한 결혼설에 대한 반박 인터뷰에 관한 보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업적으로 악용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쟁 점 4 : 손해배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

- 보도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적정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 -

박 유 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이 사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3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보도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은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액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언론사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실 확인, 당사자의 동의 등 인격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전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무책임한 보도가 횡행하고 있으며, 언론사가 거대 권력을 가지고 사전적 구제수단의 도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언론보도에 의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언론이 가지는 파급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여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 뉴스 등에 의하여 언론보도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관통하며, 그 보도에 대한 의견 개진 또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빠른 시간에 해당 사안에 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발언을 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은 여대생이나 학력을 위조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쓴 허위보도 때문에 음악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가수 타블로처럼 언론보도에 의하여 사회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연기자 고 최진실의 경우에는 불법 사채조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허위보도로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하기도 했다.⁴⁾

본 사안의 신청인 1은 이 사건 보도로 사생활의 평온이 깨어지고 가정사

4) 이 사건에서 인터넷 메신저로 고 최진실이 불법사채에 돈을 투자하였다는 소문을 최초 유포한 모 증권회사 직원만이 벌금형에 처해졌을 뿐, 그 소문을 확대 재생산한 언론사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가 대중의 화젯거리가 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신청인 2는 일본 극우 단체의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직장을 그만두었고 일본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들이 입은 손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전적 손해배상의 청구이다. 그렇다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인정한 3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은 신청인들의 피해의 정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독점 자본주의의 성숙과 함께 황색언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는 언론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보도금지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언론에 의한 피해의 사후적 구제수단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언론보도에 대한 실질적·사전적 규제수단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 등에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보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어서 무책임한 언론의 횡포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상징적인 이고 형식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였던 기존의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태도는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 보도를 자행하는 언론기관의 비도덕적 보도관행을 야기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의 구제가 가능한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이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있어 적법하며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갈 수 있는 실질적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제7조)하고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18조 제2항),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23조). 또한 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를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배상액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

회는 1981년 설립된 이래로 언론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단체의 피해 구제를 담당하여 왔고 성공적인 ADR기관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향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언론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보도관행이 근절되고 그 피해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 재 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신청인 측 주장대로 본 사건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침해가 있다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에 대한 법원 판례는 보도와 관련된 사정(기사의 내용과 크기, 게재 경위와 목적, 내용의 진실성 및 공익성의 정도, 비방성과 악의성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피해자 측 사정(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지명도,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및 언론사 측 사정(잡지 또는 신문의 발행부수, 공신력 등)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

우선 보도의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 측 결혼설과 관련한 논란은 피신청인의 본 사건 보도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 아니다. 피신청인은 타 언론사가 최초로 보도한 내용에 신청인과의 전화인터뷰를 더하여 방송한 것이고, 인터뷰의 내용도 결혼설과 함께 이를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임의적인 편집 없이 객관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보도의 내용에 신청인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이나 신청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보도 이후의 정황을 보면, 피신청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 덕분에 신청인은 자신의 입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었고, 대중의 여론도 결혼설과 이를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장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신청인은 본 사건 보도 후 결혼설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평균 시청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로서 메이저 공중파 방송사에 비하여 여론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매체이기 때문에 설령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하여 논란이 확대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폭은 미미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이 결혼설을 적극 부인하는 신청인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한 덕분에 결

혼설은 수일 내에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한편, 현재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신청인 2는 본 사건 보도로 인하여 일본의 우익단체에게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설의 내용대로 한국의 전직 합참의장의 딸과 현 일본 총리의 아들 간의 혼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개인과 집안 간의 경사를 넘어 양국 간의 비공식적인 외교관계의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일본의 일부 우익단체가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은 도외시한 채 결혼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고 신변의 위협까지 가하는 것은 그들이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극우 민족주의 파시즘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 피신청인의 보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보도와 일본 우익단체의 위협으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

나아가 그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례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살펴보면, 인터뷰를 회피한 사람을 촬영하고 방영한 경우에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성폭행 피해자의 CCTV 모습을 방영한 경우, 납치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CCTV 모습을 방영한 경우, 동물사육 기사에 애완동물 가게 운영자 사진을 게재한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척결대회 무산 보도 시 시설근무자 사진을 게재한 경우 각 200만원, 이혼의 위기를 넘긴 노부부 사연 소개 시 사진을 방영하고 불륜 당사자로 묘사한 경우 250만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100만원~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봐도 명예훼손적인 보도 없이 신청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한 창구를 마련한 본 사건 보도에 대하여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용한 것은 과하다고 볼 수 있다.

보 론 : 쟁점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검토

박 은 영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1중재부 조사관)

우선 과거 공인이었던 사람이 현재적 관점에서도 공인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2011가합27092 판결에서 원고는 용산구 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는데, 피고는 원고가 재직 당시 지자체의 세금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원고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용산구 구의원 임기 만료 후 7년간 사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해당 보도가 비록 공익성이 있다 할지라도 굳이 원고의 초상을 게재할 필요가 없었다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제2세션 토론사례에서 신청인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은 전역한 후 15년간 사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제2세션 토론에서 가장 논의가 많았던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련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비록 기자가 신청인에게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자신의 음성이나 초상이 방송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도 되겠는가?'라는 명시적 질의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 동의 여부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두 개의 조정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첫 사례의 신청인은 언론사의 인터뷰에는 응했지만 자신의 초상이 방송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언론사 측에서는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방송용 ENG 카메라를 사용해 기자가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진행했기에 당연히 신청인의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중재부는 방송에 대한 취재원의 명시적 동의 필요성을 인정, 일정액의 손해배상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즉 공개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방송에 대한 동의까지 획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언론사가 취재원에게 "해당 내용과 당신의 초상 등을 방송해도 되겠는가?"라는 명시적 질의를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중재부는 판단한 것이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 취재원이 인터뷰뿐 아니라 그 내용이 방송되는 것에도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방송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며, 취재원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동의한 초상 등을 보도한 경우는 '동의한 범위 외에 초상을 사용한 행위'로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본 사례의 피신청인 방송사는 알루미늄 호일의 문제점을 다루는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호일 제작자인 신청인으로부터 호일 성분과 제작 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했고, 신청인은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다. 그러나 실제 방송을 본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는데, 자신은 해당 프로그램이 호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양 프로그램인 줄 알고 취재와 방송에 동의한 것이지 만약 호일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부는 방송사가 취재원에게 프로그램 취지와 내용, 인터뷰한 내용을 어떻게 방송에서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했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으로 인격권에 대한 개인의 의식이 함양됨에 따라 과거에는 묵시적 동의 등 소극적 접근법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명시적 동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언론사로서는 억울함과 취재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